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3 발의연월일: 2020. 6. 2.

발 의 자:백혜련·김병욱·박광온

권칠승・박 정・안호영

김민기 • 박완주 • 김영주

김철민 · 박홍근 의원

(119]

제안이유

진술조력인은 아동, 장애인 피해자가 낯선 형사사법절차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피해자와 수사기관, 법원과의 의사소통을 중 개, 보조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수사와 재판절차에 직접 참여 하기 때문에 그 자격을 엄격히 관리해야 함.

그런데 현행법령상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와 자격취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진술조력인을 규정하는 법률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아니라 법무부령인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률에 규정하도록보완이 필요함.

또한 신속하고 원활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자질이 우수한 진술조력 인을 해당 지역에 상시 근무 배치할 수 있도록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와 자격취소, 배치사업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진술조력인 자격을 엄격히 관리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양질의 피해자 지원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법무부령 위임 사항에 '배치'를 추가하여 진술조력인 배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
- 나.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35조의2 신설).
- 다. 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사유를 규정(안 제35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후단 중 "자격이나 양성"을 "자격, 양성, 배치"로 한다.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술조력인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 라.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86조의2 및 제87조의 죄
- 6. 제35조의3(이 조 제1호에 해당하게 되어 제3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조력인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진술 조력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35조의3(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 2. 제35조의2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3. 제38조에 따른 진술조력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게 된 경우
 - 5. 진술조력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6. 정당한 사유 없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7. 그 밖에 진술조력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진술조력인에게 자격 취소 예정인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진술조력인은 법무부에 출석하여 소명(疏明)을 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진술조력인이 소명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진술조력인 자격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람에게 진술조력인 자격 취소의 사실 및 그 사유를 서면 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이 취소된 사람의 자격증 반납에 관해서는 법무부령에 따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진술조력인 양성 등) ①	제35조(진술조력인 양성 등)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진술조력인은 정신건강의학,	2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ㆍ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	
통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	
련 분야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진술	
조력인의 <u>자격이나 양성</u> 등에	<u>자격, 양성, 배치</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	
으로 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35조의2(진술조력인의 결격사
	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술조력인이
	<u>될 수 없다.</u>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
	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
	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 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 상 성범죄
 - 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

<신 설>

죄

- <u>라. 「장애인복지법」 제86</u> <u>조, 제86조의2 및 제87조의</u> 죄
- 6. 제35조의3(이 조 제1호에 해당하게 되어 제3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조력인의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이취소된 후 3년이지나지 아니한사람
- 제35조의3(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 지격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 2. 제35조의2 각 호의 결격사유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경우
 - 3. 제38조에 따른 진술조력인의

- 의무를 위반한 경우
-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게 된 경우
- 5. 진술조력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령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
 우
- 6. 정당한 사유 없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지않은 경우
- 7. 그 밖에 진술조력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진술조력인에게 자격 취소 예정인 사실과 그 사 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진술조력인은 법무 부에 출석하여 소명(疏明)을 하 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 출할 수 있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진술조력인이 소명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진술조력인 자격 취소 여 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외부 전 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을 취소한 경우 에는 즉시 그 사람에게 진술조 력인 자격 취소의 사실 및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 다.

⑤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이 취소된 사람의 자격증 반납에 관해서는 법무부령에 따른다.